

2005. 7. 29(금) 11:00  
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## 심사 보고서

=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=

의회 운영 위원회

##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7. 20. 김성진의원 외 4인  
나. 회부일자 : 2005. 7. 21.  
다. 상정일자 : 2005. 7. 26.(제11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)

### 2. 제안설명(제안설명자 : 김성진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원활한 입법활동과 각종 의안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어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 처리함으로서 의회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제2조(위촉)
  -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 위촉
- 제3조(자문사항)
  -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  -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사시 법률자문등에 관한 사항
  -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
- 제4조(위촉기간) : 2년
- 제6조(수당) :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근하)

- 본 조례는 제천시의회에서 입법 활동 및 의안심의 그리고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 시 자문에 응할 고문 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⇒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 하고, 위촉 기간을 2년으로 하며, 사임의 의사가 있거나 법률 고문에 임하는 실적이 부진 또는 불성실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고,
- ⇒ 그 기능으로서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사항, 각종 이의 신청 및 의안 심사 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
- ⇒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, 다만 의회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추가로 출석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였음.

○ 따라서 동 조례 안을 검토결과

- ⇒ 고문변호사 위촉의 필요성은 행정의 유형이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의 제·개정 및 청원 등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,
- ⇒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쟁송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과 의회의 자치입법 및 의결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도 시기적으로 법률 고문제도는 요구 된다 할 것임.
- ⇒ 현재까지는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은 없었으나, 차후 발생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관련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.

#### 4. 질의답변 요지

“ 없 음 ”

#### 5. 소수 의견

“ 없 음 ”

## 6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## 7. 심 사 결 과

“ 원 안 가 결 ”

## 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1부 끝.